

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(제7조 관련)

어업의 종류	어업의 규모 및 방법
자 망 어 업	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(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) 이하일 것
연 승 어 업	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(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) 이하일 것
패류채취어업	1. 형망: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. 손틀방류: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. 잠수기: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
낭 장 망 어 업 · 각 망 어 업	낭장망,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,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. 다만,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(W자형 등)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,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.

※ 비고: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,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